

정보시스템 감리 인력 전문성 확보 방안

서경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The Analysis of Information System Auditor's Competence

Seo, Kyeong Seog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E-mail : kssseo@korea.kr

요 약

정보시스템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감리인의 전문가적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감리 품질 및 효과 향상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정보시스템 감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은 감리인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은 감리인력 전문화 노력 및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법·제도 차원에서 개선방안과 학계 및 산업계 등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추진해야 할 단계적 접근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감리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말 제정된 후 이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고시 등이 확정되었으며,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일정규모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는 반드시 정보시스템감리를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는 감리사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감리사의 자질과 역량 문제로 감리 품질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감리인의 전문가적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감리 품질 및 효과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일 사업임에도 감리인의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 감리중점항목과 감리결과 판정이 다르게 나타나며,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유형의 판단 시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며 중점검토 분야별로 종합적인 판단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판단기준이 아닌 감리인의 주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리인 능력이 감리품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여 능력이 부족한 감리인이 투입된 경우에는 감리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1,3].

본 논문은 한국의 감리인력 전문화 노력 및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법·제도 차원에서의 개선방안과 학계 및 산업계 등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추진해야 할 단계적 접근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감리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987년 정부차원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가 처음 실시된 이래, 1998년 민간 감리법인들이 설립되어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민간법인으로 감리가 이양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을 제정 고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고시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999년)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감리 기반이 되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화사업의 관리수준 향상, 정보시스템의 기능성, 사용성, 정확성 등 시스템 품질 및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사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여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함으로써 재개발 또는 유지보수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등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현장에 투입되는 감리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에 대한 기준과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하여 부실감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였다[2].

이에, 공공부문에서 수행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의 의무실시, 감리법인 등록제도, 감리원 자격기준, 교육 등과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국가적인 정보시스템 감리체도를 도입·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12)되었다. 동법에서는 의무감리, 감리법인 등록제도, 감리원 자격 및 교육뿐만 아니라, 감리결과와 반영의무, 감리기준의 준수 의무 등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6월 정보화사업의 대상기준, 감리법인 등록기준, 감리원 자격기준 등 상세한 사항을 포함하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2008. 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제정·고시(2008. 10)되었다.

또한, 고시를 상세히 설명하는 각종 해설서, 업무지침, 사무편람 등이 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2].

이와 함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까지 약 190여명의 감리인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TA)의 교육을 통해 배출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국가 자격으로 제도화되어 2006년 말까지 약 280여명의 국가 공인 감리사가

배출되었다.

2.1 감리원 자격 및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감리는 업무의 특성상 투입되는 감리원의 전문가적인 능력이 감리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일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감리제도에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준이 다소 애매하여 기술능력이 부족한 감리 인력의 투입에 따른 부실감리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각 등급별로 필요한 교육의 이수율 의무화하였으며, 신기술에 대한 전문역량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교육의 이수를 권고하고 있다[2].

감리원 등급은 감리분야별 검정활동을 직결적으로 수행할 인력이며, 수석감리원은 감리업무의 총괄, 참여 감리원의 지도, 의견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등급마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전문교육과 기본교육으로 구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감리원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에서는 감리원의 지속적인 기술능력 유지 및 감리법제도 변경사항의 숙지를 위하여 계속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 감리원 등급별 자격기준과 교육 이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1] 감리원 등급별 자격기준 및 교육이수 요건

등급	지적기준	교육요건
수석 감리원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전문교육 50시간 이상
감리원	모집기술자(정보처리 분야) 이상 - 기사+정보처리 경력7년 이상 - 신입기사+정보처리 경력0년 이상 감리 유사 자격(정보무장관 고시) - 한국안산원 감리인 인정서 취득자 - 정보통신기술사 - 정보보호전문가 1급 (단, 정보처리 경력5년 이상) - CISA 정식자격자 (단, 정보처리 경력5년 이상)	계속교육 3년간 기본교육 총 40시간 이상

감리원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 경력에 의한 기술자의 감리원 참여가 배제되었다. 따라서 수석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처리 분야 기술사 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즉,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쌓아도 경력만으로는 수석감리원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1]에서 감리원 등급에 해당하는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증의 경우에는 "정보처리" 직분분야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감리인력 수급과 특정 기술분야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호전문가, CISA 등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교육을 통하여 감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단,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CISA 정식자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처리 경력 5년 이상(자격 취득 권속 경력 무관)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수석감리원 등급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경우에는 "정보처리" 직분분야, 즉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술사인 경우만 인정되며, "정보통신" 기술사의 경우에는 전문 분야의 차이에 따라 감리원 등급으로만 인정된다.

감리원 교육 내용은 [표2]와 같으며, 시행령 제15조 2항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현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매년 초에 당해연도에 추진할 정보시스템 감리원 교육일정 등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자신의 자격등급에 맞는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된다.[2]

[표2] 감리원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과목 구성 및 시간
기본교육	감리업무 관련 규정기관 및 지침의 이해 용인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이론과목 : 12시간 · 실습과목 : 28시간
전문교육	감리종ial 업무의 수행 감리원의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 이론과목 : 16시간 · 실습과목 : 34시간
계속교육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 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감리관련 최신 개정 법령 및 기술동향 등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등 인정

통제의 감리제도 하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감리인들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조치(부칙 제2조)로 2007년 6월 이전까지 감리원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한시규정) [표3]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하였다.

[표3] 감리경력 인정기준

등급	인정기준	특례 인정의 제한조건
수석감리원	감리경력 800일 이상인 특급기술자	·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한시규정) · 법 시행일 이전(2006.8.30)까지 감리경력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감리원	감리경력 30일 이상인 자	· 구체적인 감리경력 인정방법절차는 형보시스템 감리원의 지과 및 교육 등에 관한 호시. 참조

참고로, 수석감리원 등급이 가능한 특례 대상자의 경우, 특급기술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이외에 학·경력에 의한 경우도 모두 인정되나, 경력은 반드시 정보처리 경력으로 한정함으로써 정보처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경력을 인정하였다.

2.2 해외 사례연구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도입·적용하고 있는 해외 유사감리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감리제도와 비교함으로써 감리 제도상의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적용하고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 하였다.

2.2.1 미국 감리제도

가장 먼저 감리제도를 확립한 미국의 경우는 민간 중심으로 감리가 발전되어 왔다. 미국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표4]와 같이 1973년 미국 Equity Funding 보험회사에서 대형 컴퓨터 범죄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1974년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에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내부통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식화 되었다.

현재의 미국 감리제도는 민간분야의 정보시스템감사협회인 ISACA를 중심으로 한 정보시스템 감리 자격인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

Auditor)가 주축으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4,5]

[표4] 미국 감리제도 현황

구분	감리제도
국가기관	- 자체 감사인의 고유업무로 시행 또는 대체
민간분야	- CISA 및 기타 전문전문가 주축으로 감리시행 - 주요기업의 70% 정도 감리 시행
감리연구 현황	- 국가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발전 - 공인회계사회, 정보시스템 감사인협회, 감사국 등 기관별 규정 설정
감리시행 연혁	- 1989년 EDP감사인 협회 설립 - 1996년 정보시스템감사통계협회도 명칭 변경 - 1973년 Equity Funding 보험회사 범죄사건 을 계기로 정보시스템감리의 필요성 인식 - 1974년 미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 시 EDP 대한 내부통제를 검토하도록 공시화 - 1980년 CISA 자격시험 실시

[자료] 해외정보시스템감리유사제도비교연구, NIA (2004)

2.2.2 유럽 감리제도

유럽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 안전 신
뢰성,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효과 경
도 등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은 개인정보를 인격권 차원에 엄격하게 보호
하는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프라이버시
법규제·개정 하였다. 또한, 모든 EU 회원국은 법
률 또한 공공과 민간을 통합하는 기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법·제도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법·제도 현황

구분	법률	적용범위	감독기구	신규제도
영국	Data Protection Act 1998	민간, 공공	Data Protection Commission	0
독일	Federal Data Protection Act	민간, 공공	Data Protection Commission	0
프랑스	정보처리 자유 및 자유에 관한 법률	민간, 공공	정보자유화 위원회	0
스웨덴	Personal Data Act(1998)	민간, 공공	Data Protection Commission	0

[자료] 해외정보시스템감리유사제도비교연구, NIA (2004)

영국의 정보시스템감사(Computer Audit)도 미국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부감사(Internal Audit)의
일부 또는 특정 분야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초기의
제한적 형식(I/O 란을 대상으로 감사 수행)에서 발
견하여 현재는 IIA(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가 중심이 된 감사인 자격제도와 BSI 인
증원의 BS7799 심사원 제도가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 4개국의 평가제
종의 상호인정 및 평가 기준으로 제정된 ITSEC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riteria)은 유럽 권역에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감사인 자격제도로 IIA-UK와 Ireland의 QICA)가 대
표격이며, IIA의 the Practitioner Qualification과
IA-UK와 Ireland의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가
있다.[4,5]

2.2.3 일본 감리제도

일본은 국내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와 발전양상이
유사하다. 1987년 일본 공인회계사회(JICPA)에서
[EDP 시스템 내부통제 질문서]를 발간하여 회계감
사 수행시 정보시스템 처리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
응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 통상성에서 [시스
템 감사 기준]을 제정, 공포하여 시스템 감사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였다. 1980년부터는 미국의 CISA와
비슷한 '정보처리감사기술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영역을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안전대책, 컴퓨터 바
이러스 대책 등의 초치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1991년부터는 정보시스템감사제도의 일환으로
통상성 주관 하에 '시스템감사기업대상 등록제도'
시행, 1999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에서 '시스
템 감사인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
다.[4,5]

일본 감사인 인정제도는 시스템감사인과 시스템
감사인보에 대한 교육과 인정제도를 연계하여 재
교육을 통한 감리인의 역량을 유지토록 제도화하
고 있어 우리나라의 감리인 교육에 대해서도 중요
한 방향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 QICA(the Qualification in Computer Auditing) :
IA-UK와 Ireland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감
사 간편 자격제도

[표5]일본 시스템감사인인정제도

구분	주요내용
인정기간	-인정일에서 3년 경과한 해의 말일
인정갱신기간	-인정기간중요의 천 3개월-천 1개월
재교육상장기간	-1년차 인정일의 다음해 연말까지 -2년차 초-그 해 연말까지 -3년차 초-그 해 인정갱신신고 기한
재교육실적 신고기간	-해 연말까지의 3개월 이내에 필도 철회가 지정하는 양식에 기재 신고
재교육인정요건 의무시간	-시스템감사인 1년간 최저 30시간, 3년간 최저 130시간 의무시간 -시스템감사인보: 1년간 최저 15시간, 3년간 최저 60시간 의무시간

[자료] 해외정보시스템감리유사제도비교연구, NIA (2004)

2.3 감리제도 활성화 및 감리인력 전문성 확보방안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미국은 관리예산처(CMB), 회계감사원(GAO) 등 정부 측의 내부 통제 및 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오대 전부터 시행하여 왔고, 민간 부문 역시 여러 단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루도 민간 주도 감리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시스템 감사의 기본적인 배경은 정보시스템의 위험관리와 이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시행이며,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기본 방향은 통제나 기준에 의한 감사보다는 기술적 자문의 성격이 강하다.[4.5.6]

[표6]국가별 정보시스템감리 제도

국가	주도	의무화	법원등록	감리인	감리기준
한국	정부 (NIA)	의무감리 (공공부문)	감리법인 등록기준	정보시스템 관리역	감리법, 지침 제정
미국/유럽	민간	임의감리	없음	신성실수기 SA 등	감리기준, 기준 등제정 (CISA)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	임의감리	시스템감사 기법대상 등록제도	신성실수기 기술사	신성실수기 기술 제정

[자료] 해외정보시스템감리유사제도비교연구, NIA (2004)

국가별 감리제도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감리제도의 활성화 및 감리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 감리기준의 단계적 확대 및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과 평가체계의 연계이다. 국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는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한 감리만이 의무감리이며, 운영 감리 등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다. 또한, 감리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금액에 따라 의무조항이 제한되고 있어 개발사업에서의 의무 감리범위 확대와 감리 영역의 확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와 정보화 사업 평가의 연계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의 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반영,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의 분석으로 기관별, 사업별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의 최종목표인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책임감리 제도의 도입과 정착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과업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개발기간 준수, 품질 확보 등의 사업관리 측면에서의 감리뿐만 아니라 감리 의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며 감리도 인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배상까지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감리이다. 이러한 책임감리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중요 요소 중 하나는 감리인이다. 감리인은 사회적인 공인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사명감에 충실한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감리인 양성 교육기관의 다양화 및 체계화이다. 현재는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필요한 정보시스템감리인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확보된 감리인의 재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미흡하며,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법인이나 관련 협회 등에서도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CISA, 일본의 시스템감사기술사 자격교육시간, 우리나라의 정보시스템감리원 자격유지 의무시간은 [표8]에서처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

협함을 알 수 있다.

[표 8] 국가별 감리유사제도 의무교육

구분	주요내용
한국 (정보시스템감리원)	-수직감리원 전문교육 50시간 이상 -감리원기본교육 40시간 이상 -계속교육 3년간 총 40시간 이상(필수)
미국 (CISA)	-연간 최소 20시간 이상 -3년간 최소 120시간 이상 (자격유지 필수 요건)
일본 (시스템감리기술사)	-시스템감리사 1년간 최저 30시간 3년간 최저 120시간 의무 -시스템감리사 1년간 최저 15시간, 3년간 최저 60시간 의무

우선,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 관리가 엄격한 미국 CISA의 경우 연간 최소 20시간 이상, 3년간 최소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자격유지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그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시스템감리인의 경우 연간 최저 30시간 3년간 최저 120시간의 의무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직 감리원의 경우 전문교육 50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3년간 총 40시간 이상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타 국가에 비해 그 수준이 미흡하다.[6]

현재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감리원 자격 부여를 위한 기본교육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감리법인이나 감리단체의 경우는 그 활동이나 실적이 미미하다. 그나마, 일부 대학원에서 정보시스템 감리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감리 과정을 통해 배출된 감리인의 역량이나 효과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감리자격제도를 통한 감리인 양성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감리인을 확보하는 활동이라면, 확보된 감리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전담기관 및 감리법인,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학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정보시스템 감리는 신뢰와 권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만 본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감리인이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인은 개인

적으로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감리 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필요하다.

또한, 감리인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타 분야 전문가들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 감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감리 의무교육에 대한 내실화이다. 미국의 CISA, 일본의 시스템 감사기술자의 의무교육 시간보다 적은 한국의 정보시스템감리원 자격 유지 의무시간을 늘려나가고, 의무교육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개선 체계를 갖추어 나가자. 또한 교육 실적 확인 방법 등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지속 되어져야 한다.

둘째, 감리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무교육 다양화 및 전문화 기회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의무교육 체계를 관련 단체 및 법인, 발주기관, 학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자 의견이 고려된 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 기회 개발이 그것이다.

셋째, 능력 있는 감리인이 감리 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우수한 감리인이 감리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감리 수가의 현실화 및 감리인의 감리의견에 대한 독립성 확보 방안 등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 [1] "정보시스템감리 의무화 방안 연구", NIA, 2002.
- [2] "정보시스템 감리절점 해설서", NIA, 2007.
- [3] "정보시스템 감리인의 역량이 감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나릉수회 1인, 정보화정책 제14권, 2007.
- [4] "해외정보시스템 감리유사제도 비교 연구", MA, 2004
- [5] "2008 정보시스템 감리 심포지움",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 2008.
- [6] "2007 정보시스템 감리 심포지움",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 2007.